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2891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50	최보윤의원	2024. 7. 17.	2024. 8. 20.
	2038	서미화의원	2024. 7. 19.	2024. 8. 20.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 8. 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11. 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비용추계 생략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고,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장애인학대 예

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하여 확대함(안 제59조의4제2항).

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로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두도록 함(안 제59조의11제2항).

라.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의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59조의20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9조의4제2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59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둔다”로 한다.

제5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생 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③ ~ ⑥ (생 략)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22. (생 략) <신 설>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2. (현행과 같음)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신 설>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신 설>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②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